

의안번호	2213493
의 퇴 인	민형배 의원
회 답 일	2025. 10. 14.
추계번호	25F5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4조의36 (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적용요건: 여성임원비율 35% 이상,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이 남성근로자 대비 85% 이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대체 여성근로자 고용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4조의36 (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여성임원비율, 남녀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인건비 30%(10%)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
-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여성직원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평균적인 여성의 급여수준도 남성 대비 낮은 수준임
 - 여성임원 비율과 남성대비 여성 급여수준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개정안의 여성임원 비율요건(35%)과 남성대비 여성 급여수준 요건(85%) 등은 평균적인 수준을 상회하지만,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의 인건비 30%(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표 1] 국내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단위: 명, %)		
	2022	2023	2024
여성 임원수 (여성임원 비율)	915 (6.8)	1,113 (7.9)	1,221 (8.8)
여성 직원수 (여성직원 비율)	340,395 (34.2)	364,541 (35.4)	356,291 (35.6)
남성 대비 여성 평균급여	66.6	68.5	71.0

자료: 리더스인덱스, 2025년 다양성 지수

주: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한 376개 기업 대상

- 개정안의 신설 세액공제는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첩되는 적용대상 및 요건이 존재하므로, 세액공제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성별 임원 및 근로자 구성, 성별 급여수준, 육아휴직 대체고용여부 등의 적용요건정보와 더불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된 과세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관련 정보가 부재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임원비율, 남녀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인건비 30%(10%)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